

#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'97. 12. 12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7. 11. 26

○ 회부일자 : '97. 11. 26
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○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 ('97. 12. 12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공업경제국장 : 목 원 근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
-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작성 고시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함

## 나. 주요골자

### ○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동조례 모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4명, 찬성 4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불임서류

-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안